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9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김경만・양이원영・신정훈

김홍걸 · 박홍근 · 서영석

이장섭 · 남인순 · 윤미향

이개호 • 아수잔삐 • 이성만

의원(12인)

제안이유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 중 하나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특히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당해도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여력의 부족 등으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기술탈취 근절 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기술유용행위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분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 피해 중 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탈취를 근절하여 대·중소기 업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술 유용 행위를 정의하고,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함 (안 제2조제12호 및 제25조제3항 신설).
- 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 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1조의 2 신설).
- 다.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 시, 위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 라. 기술 유용 행위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후 개선을 요구한 경우 해당 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27조제1항).
- 마. 위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함(안 제40조의2제2항).
- 바.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3 신설).
- 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와 제2 5조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기술 유용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된 기술자료(이하 "유용금지 기술자료"라 한다)를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나.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 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유용금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유용금지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

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 중 "60일이"를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 중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를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3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해당 임직원의 수탁기업에 대한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약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어야 한다.
-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대하여 기술 유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25조제3항의 행위와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수탁·위탁거래의 대상인 물품등에 관한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기술 유용 행위의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 1. 수탁·위탁거래 중이거나 종료된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배

제하고 수탁·위탁거래에서 정하거나 예정하였던 다른 거래처와 수 탁·위탁거래 대상이었던 물품등에 관한 거래를 한 사실

2. 수탁·위탁거래 중이거나 종료된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대상이었던 물품등과 유사한 물품등을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 위탁을 한 사실

제26조제1항 중 "제23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을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을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한다.

해당 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8 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항 중 "요청"을 "요청(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 제22조"를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제14호를"을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제25조제3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개선요구의"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를 "법원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하여 해당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9. 위반행위의 은폐, 은닉 등을 하려는 시도 여부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의3을 제40조의4로 하고,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 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구)	-11 -71 AI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기술 유용 행위"란 다음</u>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	
	니하고 비밀로 관리된 기	
	술자료(이하"유용금지 기	
	술자료"라 한다)를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	
	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3	
	자에게 공개(비밀을 유지	
	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신 설>	제21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유	
	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유용금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유용금지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② (생략)
-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u>60</u> 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 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 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13의2. (생 략)
 -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 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 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 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
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
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
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u> 물
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수사항) ①
<u>.</u>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가.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 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나. (생 략)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 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 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 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 원(權原)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생 략)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생 략)

가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3항의		

나. (현행과 같음)

-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 유용금지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 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유용 금지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 유할 임직원의 명단, 해당 임직 원의 수탁기업에 대한 비밀유 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약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 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 업에 주어야 한다.
 -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대 하여 기술 유용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신 설>

② 제25조제3항의 행위와 관련 된 분쟁해결에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수탁·위탁거래의 대상인 물품등에 관한 유용금 지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는 기술 유용 행위의 입증책임 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 1. 수탁·위탁거래 중이거나 종 료된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 업을 배제하고 수탁·위탁거래 에서 정하거나 예정하였던 다 른 거래처와 수탁·위탁거래 대상이었던 물품등에 관한 거 래를 한 사실
- 2. 수탁·위탁거래 중이거나 종 료된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 위탁거래 대상이었던 물품등 과 유사한 물품등을 제조하거 나 제3자에게 제조위탁을 한 사실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 조치요구 등) ① ------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

-----제23조 또는

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 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 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 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 25조 또는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 22조의2, 제23조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u>-</u>
② (현행과 같음)	
ll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①	
<u>제21</u> 조	<u> </u>
제1항, 제22조, 제2	2조의2, 제23
조 또는 제25조제1	항부터 제4항

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u>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후</u>단 신설>

② ~ ④ (생 략)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 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

<u>까시의 ㅠ성을</u>
<u>요구하여</u>
야 한다. 해당 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21</u>
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
<u>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u>
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 항부터 제4항까지를

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 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조정을 <u>요청</u>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 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 령을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 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 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 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제28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요청(제27조제
1항 후단에 따라 요청이 있는
<u>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세40소(자료의 세월 등) ①

있다.

- 1.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 2. ~ 4. (생 략)
- ②・③ (생략)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 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 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 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 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위반행위에 따른 <u>개선요구의</u> 내용 및 공표 여부

1. <u>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u>
2조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
행과 같음)
②제25조제1항제14
호 또는 제25조제3항을
<u>,</u>
③
1. ~ 3. (현행과 같음)
4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신 설>

5. ~ 7. (생략)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제57조를 준용한다.

<신 설>

-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 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6. ~ <u>8.</u> (현행 제5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 9. 위반행위의 은폐, 은닉 등을 하려는 시도 여부

4 -----

---법원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하여 해당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 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 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신 설>

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 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 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 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 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 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 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 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 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 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의제) (현행 제40조의3과 같음)

제4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제4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략)

제41조(벌칙)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 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u>제2항에</u> 따른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신 설>

- 2. (생략)
- ③ ④ (생 략)

제4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u>.</u>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에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
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